

# 전국개인택시연대

“전국 개인택시 연대”는 조합 정관 개정을 개혁적 차원에서 표준정관 개정(안)실행 할 것을 요구 합니다. 전국 16개시도 개인택시조합의 정관 중 임원 / 감사 / 대의원 구성 선출과 운영에 대하여 대다수 조합원 들은 개혁적인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근대적인 규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조합원의 뜻에 반하는 절차와 의결로 조합원에 분노를 일으키고 조합 집행부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안이한 태도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 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비민주적인 정관내용을 개혁 하고자 전국개인택시연대 에서는 전국 조합정관 (전국 표준 모범 정관) 개정내용을 토론 취합하여 전국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 대의원 이사님 들께 강력히 개정 에 앞장 서줄 것을 주문합니다.

## [전국 16개 개인택시조합]

### 임원, 대의원 구성선출 운영회의체등 표준정관 개혁개정(안)

#### ■ 이사장 선출 ■

1. 조합원 직접 선출 (광역시 도 조합 조합원 직선제)
2. 후보 기탁금 5백만 원 이하 (이사장 후보 기탁금은 5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임기 3년 1회만 연임하되 중임은 불가 한다.
4. 조합 이사장 겸직금지 (공제. 금고. 각종사업체)
5. 대의원회 의장 불가 (이사회 의장만 가능)
6. 부정비리와 조합원들에 명예를 실추시킨 이사장은 선출해준 조합원들이 평 조합원으로 소환 하는 "조합원 소환제" 를 실시한다.
7. 부정비리/선거법위반/각종범죄로 인하여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이 선고되 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

#### ■ 대의원 구성 ■

1. 각조합의 조합원 수에 평균 200~500명을 기준으로 1명의 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
2. 대의원 후보 기탁금 50만원 (임기 3년 / 2회만 연임)
3. 대의원 모든 직책 겸직금지 조합/공제/금고/충전소/징계위 조합이나 조합원과 관련 있는 협력 업체나 계약관계 업체에 직책이나 자문위원직 역임 못 한다.
4.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 선임한다(이사장의 대의원회 의장은 불가 한다.)
5. 대의원 회의는 총회라 할수 없다 ( 총회는 조합원 총회만 인정한다 )
6. 총회 소집으로 인준 받는 정관조항은 조합원 총회를 실시해야 한다.
7. 조합 집행부에 견제기구로서 총실 할 수 있는 대의원회가 될 수 있도록 월 50만 원 이상 활동비를 지급한다.
8. 대의원은 조합/금고/공제/충전소등 조합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정보와 자료 등을 요구 할 수 있 다. (이사장은 대의원이 정보와 자료제공 요청 시 즉각 응해야 한다.)
9. 대의원은 조합의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조합원 에게 공개해도 된다.

10.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이 택시업권보호를 외면하고 집행부에 견제기능을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면 조합원 수 2/3 서명으로 불신임하고 평 조합원으로 소환 할 수 있다.

### ■ 이사회 구성 ■

1. 이사는 12명~15명 기준으로 구성하며 임기3년 1회연임 으로 조합원이 직접 선출
2. 이사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조합/공제/금고/충전소 조합이나 조합원과 관련 있는 협력업체나 계약관계 업체에 직책이나 자문위원직 역임/겸직을 못 한다.
3. 이사는 회의시 회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4. 이사가 조합업무를 월권하고 각종비리로 인하여 이사회 의장직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이사회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장직을 박탈하고 의장을 이사 중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 불신임안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행할 수 있다.
5. 이사는 대의원이나 조합원이 각종자료 요청을 하면 즉각 제공해야 한다.

### ■ 감사 ■

1. 조합원 중에서 2명을 조합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불가
2. 감사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조합관련직과 금고 협력업체 / 계약관계 업체 등에 겸직불가)
3. 조합 회계와 모든 업무에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4. 감사는 민법에 따라 총회소집 권과 고소고발 권을 갖는다. (민법 제67조 (감사의 직무))
5. 감사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상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대의원회에서 2/3의 동의를 구하여 감사에게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는 1주안에 특별감사 시행절차를 이행하고 대의원회에 2주안에 보고한다.)
7. 이사회장은 감사가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시 에는 5일안에 자료 협조 하여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
8. 대의원 회의는 과반수이상 동의를 구하여 직무를 태만한 감사 불신임안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전무 이사직 제도는 폐지한다.

이사장 선거 시에 대의원. 이사. 감사 등 선출직은 동시선거를 한다.

조합원자녀 등을 조합과 관련 업무직에 취업 시는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하여 공채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은 대의원회의 에서 선출하되 조합원 중에서 도덕적이고 신뢰받는 분을 선임 한다.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된 이사장과 임원 / 대의원 / 감사는 교통사고 외 각종사건으로 1심에서 벌과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즉각 직을 사퇴한다.

이사회와 대의원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조합원 총회는 지자체 선관위에 위탁하여 모바일 투표로 할 수 있다.

2015년 10월 25일

전국개인택시연대 의장 이 성 욱